

● 국토교통부공고제 2023-1208호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재입법예고 사유

중전 입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17호)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9 2.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(별표9)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,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5조 및 제99조의2 관련)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1 차		2 차		3 차	
	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
3)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3호	경고	해당 없음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11)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제12호	영업 정지 2개월	8백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- 전자우편 : song6186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40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(전화 (044) 201 - 3485, 팩스 044-201-55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종전 심사(제2023-2601호) 및 입법예고 완료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17호)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9 2.개별기준 중 위반행위  
별 처분기준 내 일부 내용이 법제처 심사중 일부 변경되어 재입법예고 및 규제심  
사 요청하는 사항입니다.